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2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6.

발 의 자 : 서지영 · 조정훈 · 김대식  
정성국 · 곽규택 · 이인선  
박수영 · 김승수 · 이현승  
최수진 · 백종현 · 박충권  
성일종 · 박성훈 · 서천호  
박덕흠 · 조승환 · 김용태  
이종배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음. 그러나 현행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음.

한편, 이러한 제도는 국제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 미국과 일본, 중국의 경우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떠한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, 독일·프랑스·이탈리아·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유럽연합(EU) 등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처럼 여러 나라가 외국인 영주자에 대한 투표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, 우리나라가 상대국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허용하는 것은 ‘호혜성(Reciprocity) 원칙’,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.

또한 현재 국내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 명의 81%가 중국 국적자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선거제도의 균형성과 대표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, 나아가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,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주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(안 제15조제2항제3호).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3호 중 “3년이 경과한”을 “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한”으로, “사람”을 “사람.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국가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인 선거권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선거권) ① (생략)</p> <p>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<u>3년이 경과한</u>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<u>사람</u>  <u>&lt;단서 신설&gt;</u></p>	<p>제15조(선거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<u>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한</u>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<u>사람. 다만,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국가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.</u></p>